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23일, 김장식의원외 3인
-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24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7월 30일 (제2회 임시회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의원 김장식)

가.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주요골자

- 1) 위촉 :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3인 이내로 위촉(안 제2조)
- 2) 주요 자문사항(안 제3조)

- 가)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 나)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다) 자치법규의 제·개정안 등의 관련법규 및 상위법 등 저촉여부
자문
 - 라)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수행 자문 등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 3) 해촉 (안 제5조)
-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 나)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등
- 4) 수당 : 예산범위안에서 매월 수당 지급(안 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변영호)

- 검토결과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원안의 일부내용중 아래와 같이 맞춤법 표기 방법 및 오·탈자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 <수정의견>
- 안 제2조제1항중 제1호·제2호의 문장 끝부분 마침표 삭제
 - 안 제4조(위촉기간)의 “연임할수 있다”를 ⇒ “연임할 수 있다.”
로 띄어쓰기
 - 안 제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 “예산의 범위안에서”
로 하고, 단서규정인 ”다만,“을 ⇒ ”또한,“으로 수정

4. 질의·답변 :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그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을 “그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으로와, 안 제5조제1호의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를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로 수정.

5. 토론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23일, 박영송의원외 3인
-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24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7월 30일 (제2회 임시회 제1일자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의원 박영송)

가. 개정이유

용어의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변경·삭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용어(명 → 인, 간사 → 부위원장)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2) 상임위원회 소관에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재산 관리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중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변영호)

- 검토결과 조례 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7인”을 각각 “7명”으로 하고, 제4호중 “5명”을 “5인”으로 한다는 2008년도 법제처기준 순화용어 정비대상중 “명”으로의 표기가 바른표기임에 따라 개정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 안 제2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7인”을 “7명”으로 수정.

5. 토론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23일, 진영은의원외 3인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7월 30일 (제2회 임시회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의원 진영은)

가.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인의 글자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함(안 제3조제2항)
- 2) 별지 서식의 번호를 변경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변영호)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검토결과 조례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개정지시문중 일부를 바른표기 방법으로 검토결과 의견을 제출 합니다.

<원안>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검토의견>

별지 공인사고 보고서의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4. 질의·답변 : 생략

5. 토론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23일, 김부유의원외 3인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7월 30일 (제2회 임시회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의원 김부유)

가. 개정이유

조례 내용의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고, 탈자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조례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 2) 탈자 수정(안 제5조제2항제1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변영호)

- 검토결과 조례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개정 지시문의 일부중 바른 표기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원안>

제5조제1항중 후단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세종특별자치교육감으로부터”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말한다)”을 삭제한다.

<검토안>

제5조제1항중 후단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제1호중 “세종특별자치교육감으로부터”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로 하고,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4. 질의·답변 : 안 제5조제2항의 “처리 할 수 있는”을 “처리해야 하 는”으로와, 안 제5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신설 수정

5. 토론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世宗特別自治市議會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심사보고서

2012.8.2(목) 14:00
제 2차 본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2
----------	-----

2012년 8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7월 23일, 장승업 의원 외 3명
-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 8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승업 의원)

가. 제안 이유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용어 불일치 사항과 문화재청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정의)에서 “민속 자료”를 문화재법 제2조에 따라 “민속문화재”로 그 용어를 정비 함(안 제2조제1항 제4호)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 이를 삭제 함(안 제31조)
- 기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 (안 제3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정교)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정의)에서 “민속자료”를 문화재법에 맞게 “민속문화재”로 용어를 통일(안 제2조제1항제4호)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 제1항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목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에 제12조 의거 “그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 이를 삭제 함(안 제31조)

- 기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 (안 제31조)
- 이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상 용어와 같게 개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제20조 제6항의

“민속자료”를 각각 “민속문화재”로 한다

제31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 안에서”를 “다음 각 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로 하며,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를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생략) 1. ~ 3. (생략)</p> <p>4. <u>민속자료</u> : 의식주·생활·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p>4. <u>민속문화재</u> :</p> <hr/> <hr/> <hr/> <hr/> <hr/>
<p>제16조제(시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p> <p>① (생략)</p> <p>② 시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u>민속자료</u>로 구분 지정한다.</p>	<p>제16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hr/> <hr/> <p style="text-align: right;"><u>민속문화재</u>.</p>
<p>제18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p> <p>① (생략)</p> <p>②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u>민속자료</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에게 문화재의 지정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줄 수 있다.</p>	<p>제18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hr/> <p style="text-align: right;"><u>민속문화재</u>.</p> <hr/> <hr/> <hr/> <hr/>
<p>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⑤ (생략)</p> <p>⑥ 유형문화재, 기념물, <u>민속자료</u>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⑤ (현행과 같음)</p> <p>⑥</p> <hr/> <hr/> <hr/> <hr/>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4
----------	-----

2012년 8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 8월 1일 상정·의결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가. 제안 이유

세종특별자치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 위원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와 동일하게 여성참여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도록 하고 있는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기간 : 2008~2012년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여 수립한 금년도 시행계획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여성위원 참여 목표를 40%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안 제3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정교)

가. 여성참여 확대(안 제3조 제1항)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 이를 위해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12.8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목표를 40%이상으로 결정
- 안 제3조 제1항의 여성참여비율을 현행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목표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법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 여성의 역량 강화 등 국가적 여성정책 방향에 세종시도 동참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여성참여(조명칭)비율을 강조하면서 내용은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법령 등의 내용은 누구봐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하여야 함에도 현행보다 더 혼란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바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 서울시 및 경기도의 사례에서도 현행안 내용에 비율만 개정하는 방식
- 여성참여비율 40% 이행기간도 2012년 말까지 이므로 일부 분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내부기구에도 준용(안 제3조 제2항 신설)

-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됨
- 위원회 위원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선언적 규정을 불필요하게 신설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됨
 - 이 조항은 여성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면 될 사안

<참고자료>

시도별 여성참여비율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자료

시도명	위촉직			비 고
	전체	여성	여성비율	
서 울	654	220	33.6%	
부 산	423	141	33.3%	
대 구	399	87	21.8%	
인 천	406	134	33.0%	
광 주	361	118	32.7%	
대 전	458	150	32.8%	
울 산	378	106	28.0%	
경 기	467	205	43.9%	
강 원	456	159	34.9%	
충 북	373	126	33.8%	
충 남	333	113	33.9%	
전 북	406	115	28.3%	
전 남	302	106	35.1%	
경 북	429	159	37.1%	
경 남	415	125	30.1%	
제 주	451	153	33.9%	

30개 위원회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제3조의 제목 “여성참여” 와 같은 조제1항의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내용은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답변) 제3조 1항의 내용에 맞추어 제3조의 제목 “여성참여” 를 “시정 참여 확대” 로 수정함.

(질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27조 내용은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문으로 한쪽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양성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3조1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답변) 제3조1항의 조문내용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를 삭제함.

6. 토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이 오히려 한쪽 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양성평등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여성참여)”를 “(시정참여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여성위원회의 참여는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내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여성참여) 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참여는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내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여성참여) 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의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정참여 확대) ① -- -- < 삭제> --
② <신설>	②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5
----------	-----

2012년 8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7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 8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가. 제안 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2 “세종특별자치시 동의 명칭과 구역”중에서 “박연동이 행
정안전부의 승인(2012.6.7)을 거쳐 당초 ”박연동“에서 “나성
동”으로 변경되었으나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시 “박연동”으로 잘못
표기하여 제출되어 제정된 것을 바로 고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별표2(세종특별자치시 동의 명칭과 구역) 법정동 란의 “박연동”을 “나성동”으로 변경함 (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

라.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조정 통보 공문(자치제도과-1642('12.6.7))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정교)

가. 법정동명 명칭개정(별표2)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2012.7.1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시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바로 고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제출당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는 "나성동"으로 표기되어 의결 되었으나

- 같은날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별표2>에는 “나성동”을 “박연동”으로 잘못 표기되었음
-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하루 빨리 개정이 시급한 사항이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 고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행정안전부 승인공문 및 첨부물 붙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법정동 란의 “박연동”을 “나성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6
----------	-----

2012년 8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 8월 1일 상정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가. 제안 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첫 마을 공립어린이집이 11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전문적인 보육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시설현황

- 위치 : 첫마을 복합커뮤니트 센타
- 규모 : 나성어린이집(872.39㎡) 송원어린이집(885.82㎡)
- 개원일 : 2012. 11월
- 수용인원 : 각 100명

2) 위탁내용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1회에 한해 재위탁)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 자체수입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정교)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첫 마을 입주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수용된 시설을 활용 하여

* 첫마을 인구 : 7,354명 / (1단계) 5,748명 (2단계) 1,606명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첫마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필요성

- 현재 첫마을(한솔동)에 입주한 주민의 세대 구성원을 분석해 보면 취학전 아동수가 어린이집 시설 정원(200명)보다 많은 715명으로
- 중앙부처 이전시기 및 첫마을 아파트 입주인구 증가추이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운영 준비 등에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첫마을 취학전 영유아 수>

연령 인원(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23	150	138	147	149	155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첫마을 복합커뮤니트 시설에 설치 운영할 세종시 공립어린이집은 첫마을 입주민들의 취학전 아동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 금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의 취학전 자녀들의 보육 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집행부의 결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관리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 직영방식이 아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 정부청사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 : 없음.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216
----------	-----

제출연월일 : 2012. 07. 23.
제출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I 제안 이유

- 세종시 첫마을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 요구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보육의 전문성 제고
- 세종시 첫마을 입주 대상자의 보육수요 증가로 공립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대두
 - 인구 유입에 따른 자족적 보육으로 주민불편 해소

II 사업 개요

- 시설현황

구분	위치	연면적 (m ²)	정원 (명)	증사자수 (명)			개원 예정일
				계	원장	교사	
나성 어린이집	(구) 2-3블럭 (남면 나성리 산 2-1, 근린공원 22)	872.39	100	14	1	13	2012년 11월중
송원 어린이집	(구) 2-4블럭 남면 송원리 11-1 근린공원 23	885.82	100	14	1	13	"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 5년 (1회 재위탁 가능)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 자체수입

III 위탁 운영조건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어린이집운영관련 지침, 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공동주택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단,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가 수탁자로 결정될 경우 위탁계약전 일까지 제3자에게 현재 어린이집을 반드시 매각하여 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에 전념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탁이 해지됨)
- 어린이집 및 수입금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IV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 조건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

V 향후 일정

- '12. 8. : 위탁자 모집 공고
- '12. 8. : 현지답사 및 사업설명회 개최
 - ▶ 모집공고후 7일 이내 실시
- '12. 8.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12. 9. : 수탁자 선정 심의 [보육정책위원회]
- '12. 10. : 수탁자 결정 및 개원 준비
- '12. 11. : 어린이집 개원 [예정]